

의안번호	2216	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		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. 2. 2.(금) 김태욱 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2. 2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2. 20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(김태욱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국체전을 비롯한 국가행사 등에 참여하는 공익활동의 경우에도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익활동의 효과적인 수행과 구민 편익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지원 범위(안 제3조)
- 단서 조항에 “타 기관 또는” 삭제
 - 제6호 신설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국체전을 비롯한 국가행사 등에 참여하는 공익활동의 경우에도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익활동의 효과적인 수행과 구민 편익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· 위치 및 구역의 조정
- 나. 조례 · 규칙의 제정 · 개정 · 폐지 및 그 운영 · 관리
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· 감독
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 · 후생복지 및 교육
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- 사. 예산의 편성 ·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- 자. 공유재산(公有財產) 관리
- 차. 주민등록 관리
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

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-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- 라. 노인 · 아동 · 장애인 ·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-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· 운영
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 · 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 · 관리
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
- 가. 뜻·늪지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
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- 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- 사. 공유림 관리
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-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- 하.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- 가. 지역개발사업
- 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- 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- 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- 사. 자연보호활동
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- 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 - 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 - 거. 주차장 ·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 - 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5. 교육 · 체육 · 문화 · 예술의 진흥
- 가. 어린이집 · 유치원 ·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· 운영 · 지도
 - 나. 도서관 · 운동장 · 광장 · 체육관 · 박물관 · 공연장 · 미술관 · 음악당 등 공공교육 · 체육 ·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 · 등록 · 보존 및 관리
 - 라. 지방문화 · 예술의 진흥
 - 마. 지방문화 · 예술단체의 육성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· 감독
 - 나. 지역의 화재예방 · 경계 · 진압 · 조사 및 구조 · 구급
7. 국제교류 및 협력
- 가. 국제기구 · 행사 · 대회의 유치 · 지원
 - 나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· 협력